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 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 1)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중앙행정기관 위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위원의 요건을 규정
- 2)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3)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

나. 위원장 역할 및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4)

다. 회의 개최, 개의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5)

- 1) 분기별 개최를 원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가능
- 2)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 채택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공개 및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라. 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1)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2) 운영 분과, 의료행위 분과, 약무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마. 업무조정분석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13조의8)

1)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업무조정분석센터로 지정하고 지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제13조의9부터 제13조의12까지로 하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 ① 법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부
2. 법무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고용노동부

8. 식품의약품안전처

9. 질병관리청

10. 법제처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④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5(회의)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의결을 채택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개 자료 및 방법 등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6(간사) ① 업무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7(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안전 심의·조정 등을 위한 운영 분과

2. 지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심의를 위한 의료행위 분과(필요시 복수로 둘 수 있다.)

3. 의약품 처방·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약무 분과

4.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의료기술 분과

5.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기타 보건·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관리 분과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

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8(업무조정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연구센터(이하 “업무조정분석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분석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위원)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노동자 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u>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u> <u>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u> <u>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u> <u>1. 교육부</u> <u>2. 법무부</u> <u>3. 국방부</u> <u>4. 행정안전부</u> <u>5. 보건복지부</u>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고용노동부

8. 식품의약품안전처

9. 질병관리청

10. 법제처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2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
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
는 공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을 갖춘 사람

④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
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
의2제1항에 따른 업무조정위원회
(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발
히는 경우

<신 설>

제13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신 설>

<신 설>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5(회의) ① 업무조정위원회 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의결을 채택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개 자료 및 방법 등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6(간사) ① 업무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신 설>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7(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안전 심의·조정 등을 위한 운영 분과

2. 지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심의를 위한 의료행위 분과(필요시 복수로 둘 수 있다.)

3. 의약품 처방·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약무 분과

4.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의료기술 분과

5.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기타 보건·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심의를 위한 보건관리 분과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신 설>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8(업무조정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분석센터(이하 “업무조정분석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 분석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6